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9968
----------	-------

제출연월일 : 2026. 7. 1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완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승인의 의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제24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제24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 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 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 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 제1항에 따라 <u>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 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 다.	4. ----- ----- ----- ----- ----- <u>특별시장·통합 특별시장</u> ----- ----- ----- ----- -----
4의2. ~ 9. (생 략)	4의2.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9조의2(승인의 의제) ① 제17 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제24 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u>

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제24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17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21조(신고)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first row begins with a small black dot positioned between the middle and bottom dashed lines,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maining nine rows are completely blank, providing ample space for practice.

1. ~ 5. (현행과 같음)
6. _____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
료한 경우 <단서 신설>

7. ~ 10. (생략)

② ~ ⑤ (생략)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 ⑤ (생략)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 ④ (생략)

----- . 다만, 「국가유산수
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
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 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u>특 별시</u>·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유 산” 앞에 해당 <u>특별시</u>·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 다. ⑥ (생략)	⑤ ----- ----- ----- <u>특</u> <u>별시</u>·<u>통합특별시</u>----- ----- ----- ----- <u>특별시</u>·<u>통합특</u> <u>별시</u>----- ----- --. ⑥ (현행과 같음)
---	--